

#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전 사전협의 결과

##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 개정】

### 1 목적

- 철도안전법, 수시검사 시정조치사항 개선 반영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사전협의

### 2 관련근거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1조(변경 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전 사전협의 요청(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9144, '20.12.18.)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전 사전협의 요청(보완)(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9293, '20.12.23.)

### 3 주요 변경내용

-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개정
  - (유지관리체계) RAMS 연차별 추진계획 변경
-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절차 개정
  - (전동차검사작업안전예규) 철도안전법 개정사항 반영 등
  - (차량기지운전취급내규) 교통공단 수시검사결과 시정조치사항 반영 등
  - (전동차승무원업무예규) 교통공단 수시검사결과 시정조치사항 반영 등
  - (기술분야 RAMS 운영예규) RAMS 연차별 추진계획 변경

## 4 검토의견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0조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에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 필요

- 다음 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판단함

연번	변경대상	주요 변경내용	보완사항
1	유리관리 프로그램	- (125.2 유지관리 결과의 활용) RMAS 연차별 추진계획 변경	
2	전동차검사작업 안전예규	- 철도안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철도종사자 음주확인 절차 일원화	
3	차량기지운전취급내규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시검사결과 시정조치 사항 반영 - 내부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사항 반영	
4	전동차승무원 업무예규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시검사결과 시정조치 사항 반영 - 내부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사항 반영 - 타 규정 중복에 따른 제110조 2항 삭제	-변경 전후 대비표 해설서 보완
5	기술분야 RAMS 운영예규	- RAMS 연차별 추진계획 변경	

○ 기타의견

- 변경신고 시 사전협의 검토결과 첨부
-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 변경 전·후 대비표 및 해설서에 변경사유를 명확히 기술
- 변경되는 내용은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에 일괄적이고 공통적으로 반영
-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검사반과 협의를 거친 후 변경신고 시행

- 붙임 1. 변경신고 철도관련법령,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1부.  
2. 변경신고 절차 및 주요내용 1부.

## 변경신고 철도관련법령,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제7조 제3항)**

-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1.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
3. 철도차량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의 증가  
가. 교량, 터널, 옹벽  
나. 선로(레일)  
다. 역사, 기지, 승강장안전문  
라. 전차선로, 변전설비, 수전실, 수·배전선로  
마. 연동장치, 열차제어장치,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건널목보안장치  
바. 통신선로설비, 열차무선설비, 전송설비

4. 철도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5.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양수
6.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7.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 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0조 제1항)**

제2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철도운영자등이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의 3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 변경신고 절차 및 주요내용

절 차	주 요 내 용
사전협의	- 대상기관 사전협의 (대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변경신고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변경 신고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대상기관→국토교통부)
↓	
변경신고확인서 발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국토교통부→대상기관)
↓	
변경 신고사항 통보	-철도운영자등의 변경 신고사항 통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력관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관리대장 기록(한국교통안전공단)